

## ○○○씨 경진대동보 편찬위원회 규정 및 편찬기준

### 1. 경진대동보 편찬위원회 규정

제 1 조(명칭) 본회의 명칭은 ○○○씨 대동보편찬위원회(이하 본회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○○번지 ○○○씨대중회관내에 둔다.

제 3 조(구성) 본회는 지역중친회 회장과 파중회장 및 편찬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제 4 조(목적) 본회는 대동보 편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신보 발간이후에 출생, 사망, 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수보 및 구보의 수단누락 중친들의 입보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선조의 훌륭한 행적 등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화함으로써 위업을 선양하여 중친상호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중친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5 조(임원)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위원장	1인	부위원장	4인
이 사	10인내외	감 사	3인이내

제 6 조(고문, 자문위원) ①본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둔다.

②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추대한다.

제 7 조(보소) ①대동보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회에 보소를 둔다.

②보고 주관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하고 그 외에 필요한 인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③파중회는 자체결의에 의하여 수단보소를 둘 수 있다.

④파중회는 각 지파의 수단유사를 선정하고 중앙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임기) 본회의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본 사업의 종료시까지로 한다.

제 9 조(임무) ①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③보소 주관임원은 대동보 편찬업무를 담당한다.

④감사는 회계 사무를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총회) ①본 회에 총회를 둔다.

②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가. 예산, 결산

나. 임원선출

다.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

라. 대동보 편찬위원회 해산

마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1조(이사회) ①대동보 편찬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회에 이사회를 둔다.

②이사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.

③이사는 고문, 자문위원과 편찬위원 중에서 족보에 관한 식견이 많은분을 호선에 의하

여 선출한다.

④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- 가. 파종간의 이견조정
- 나. 계과 불분명자의 입보문제
- 다. 예산승인
- 라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2조(회의) ①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.

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대총회 정기총회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를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이사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④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⑤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구성원은 대리인 또는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13조(회의록)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구성원 2인이 서명날인한다.

제14조(재정) 본회의 수입은 수단금과 대동보 대금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15조(예산결산)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단 사업초년도의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가름한다.

제16조(회계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총회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7조(해산 및 청산) 본회는 사업목적을 달성하면 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며 청산업무는 대총회에 인계한다.

## 부 칙

제 1 조(시행)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2. 경진대동보 편찬기준

1. 족보의 명칭 : ○○○씨대동보(경진보)
2. 추진기구 : ○○○씨대동보 편찬위원회
3. 족보의 규격, 권수 : 4×6배판 양장으로 하고 단수는 현행 8단을 6단으로 재편하며 1권당 쪽수는 1,000쪽 이내로 하고 1질은 11권(예정)으로 한다.
4. 기준보 : 경신보로 한다.
5. 구보의 한글화 :
  - ① 경신보 1권의 문헌 등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한글화하고 해석문 다음에 원문을 기재한다.
  - ② 경신보 각권에 등재된 자손록은 전부 한글화한다.
6. 연월일 표기 : 서기로 표기한다.

예) 1997년 6월 22일생

7. 국·한문 사용 : 인명, 지명 등 고유명사는 괄호 안에 한문을 넣고 그 외에는 가능한 한 한글로 한다.
8. 남녀의 배열 : 선남후녀(先男後女)로 하고 연장순(年長順)으로 한다.
9. 유적, 유물 등의 사진 : 칼라로 촬영하여 편집한다. 다만, 실전된 경우에는 옛사진을 활용한다.
10. 선영도 : 선영도에는 항공사진과 천연색 지도를 삽입한다.
11. 파별순위 : 세계도(世系圖)의 순서대로 한다.
12. 파계도(派系圖) : 현 28세까지로 되어있는 파계도(派系圖)를 36세까지로 확대한다.
13. 족보의 신청 :
  - ① 전보(11권) 1질(帙)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파보는 인정하지 않는다.
  - ② 족보신청시에는 신청예약금 50,000원을 수단금과 같이 납부한다.
  - ③ 족보대금은 신청부수를 감안하여 추후결정통보
14. 수단금 : ① 수단금은 관(冠) (기혼남녀 ○○○씨) 15,000원  
 ② 동(童) (미혼남녀 ○○○씨) 10,000원  
 단, ○○○씨(남)의 부인과 ○○○씨(여)의 남편과 외손은 수단금을 받지 않는다.
15. 수단위원(유사) : 각종파의 수단위원은 해당종파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고 대동보편 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대동보소 제반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16. 수단기록사항
  - ① 공직
    - 일반공무원 : 사무관 이상(예 : 서기관, 국방부 정훈국○○과장)  
 (면장, 읍장, 통일주체국민회의의원, 평통자문위원 포함)
    - 군 인 : 위관 이상
    - 교 직 : 교감 이상(초중고) 대학교수(전임강사) 이상
    - 국영기업 : 부장 이상(상장기업 포함)
    - 일반회사 : 대표이사(비상장주식회사)
    - 경찰 : 경정(警正) 이상
    - 선출직 : 시군구의회 의원 이상
    - 언론기관 : 부장 이상
    - 향교 : 전교(典敎) 이상
    - 종교계 : 주지, 목사
  - ② 고시 : 행정고시, 외무고시 사법시험 기술고시(회수기재)
  - ③ 학력
    - 전문대는 “전문대졸” 4년제대학 이상은 ○○학사 ○○석사 ○○박사
  - ④ 상훈
    - 표창 …… 대통령 표창
    - 훈장 …… 전체, 훈장명, 훈장번호
    - 효열 …… 명칭, 기관명(시장, 군수 이상 대중회장 표창 포함)
  - ⑤ 묘소
    - 1) 지번, 좌향

- 2) 공원묘지는 묘지명, 묘번
- ⑥ 입출계(入出系)  
 입계(入系) : 생부(生父)명, 계자(系子)표시  
 출계(出系) : ○○후
- ⑦ 여식(女)  
 1) 기혼녀, 미혼녀 모두 자와 동일시한다.  
 2) 차서는 생년월일 순으로 한다.(단 망자는 망년월일을 기입한다)
- ⑧ 배(配)  
 1) 배의 4조는 구보에 기록된 것 외에 본보에서는 배의 부모만을 기록한다. 다만 배의 부모 관직은 수록할 수 있다.  
 2) 배의 성명과 생년월일, 관직, 학력, 상훈을 수록한다.  
 예) 김해 김숙자 1935년 3월 5일생  
 부김길동(金吉童)모풍양조영자(豐壤趙榮子)
- ⑨ 사위  
 1) 출가녀의 남편은 부로 하고 평에서 1자고(1字高)로 한다.  
 2) 본관 성명과 관직은 시장, 군수급 이상만 수록한다.(외국인인 경우 본관대신 국명을 쓰고 성명은 고유명사임으로 그대로 사용한다. 생년월일, 학력은 기재하지 않는다.)  
 3) 외손은 부 다음에 자, 여의 이름만을 수록한다.
- ⑩ 추록, 보충수정금지  
 손록보주는 역대구대보상에 선현들의 기록과 문헌의 고증을 존중하고 고증없이 기록된 부분은 족보의 존엄성과 정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추록(追錄)하거나 보충수정하는 것을 불허한다.
- ⑪ 임의환본금지(任意還本禁止)  
 구보에 이미 재록된 계후자(系后者)가 자의(自意)로 환본(還本)함은 이를 용인하지 아니한다. 다만 소후부(所后父)의 소생자(所生者)가 있거나 양측의 완전한 동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로 인정하고 그 사유를 밝힌다.
- ⑫ 수단인국한  
 상기 수단변경사항 등은 금반 수단인에 국한하여 적용하고 기몰자(既沒者)는 경신보에 의한다.
- ⑬ 행장  
 군지, 시지, 이상에 등재한 인물은 기재를 인정한다.

○○○씨 대동보편찬위원회